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점들

구인회*

I. 서론

금세기를 이끌어갈 원동력은 생명과학기술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듯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복제기술의 마술에 현혹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계, 언론매체, 시민단체, 학계 모두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찬양 일변도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했었다. 그리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 제기과 연구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현대과학 기술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 범위가 전사회, 전세계에 이르며,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을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과학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선한 데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선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역시 올바르고 선해야 한다.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의 치료를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란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배아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근본적인 윤리문제를 안고 있다. 난자와 정자로 수정된 배아이든,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연구용으로 만들어진 복제배아이든, 불임시술 과정에서 남아 냉동 저장

된 잔여배아이든 모두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간존재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을 돕는다는 좋은 목적을 위해 연구한다지만, 생명을 조작하고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배아가 죽게 되는 것이다.

배아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조차 없는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개체로 될 수 있는 인간존재이다. 지금 존재하는 우리는 모두 배아의 시기를 거쳤으며, 배아는 인간으로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로라고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이러한 커다란 희생이 없이 가능한 성체줄기세포연구라는 대안이 있다.

또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인간을 위해 실용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동물실험을 거쳐 안정성이 확보된 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을 통해 그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생명과학의 진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에 대해 과연 우리는 알고 있는지 비판의식을 일깨우고 의문을 던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윤리의 과제이다.¹⁾ 본고에서는 배아연구로 인해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과학교실. 02-590-1048, ihku@catholic.ac.kr

1) Eibach U, "Menschenwuerde, Lebensbeginn und Embryonenforschung" S. 170, in: Fuat S, Oduncu, S, Schroth, U, Vossenkuhl, W, (Hg), Goettingen 2002 Stammzellforschung und therapeutiscens Klonen S. 170-200

II. 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인격체 개념 사용에 대한 검토

혹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배아는 행위 주체가 아니며, 아직 인간이 아니며, 좀 더 정확히 정의하자면, 잠재적 인간 혹은 미래의 인간이다. 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존재이며, 아직 자율성이 없으므로, 단지 미래의 인간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²⁾

착상시점부터 배아는 엄마와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이러한 관계는 보호될 수 있으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³⁾

또한 인격체로서의 인간형성을 점진적인 발전과정으로 파악하여, 인간존재는 발달의 과정에서 비로소 존엄성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도덕적 신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⁴⁾

배아의 지위에 관한 논의에서는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이용될 뿐 아니라, 동일한 개념들이 흔히 다르게 해석된다. 특히 인격체라는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생명 윤리의 논의에서 인격체로서의 인간(Person)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인격체 개념이 일정한 도덕적 지위의 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이며,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본래 보호되어야 할 특정한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⁵⁾ 또 인간(Mensch)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의미인 반면, 인격체로서의 인간(Person) 개념에는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 인간의 권리는 인

격체로서의 속성을 지닌 경우에만 인정되고 보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격체임은 단순히 일정한 속성을 지니는다는 문제로 축소되기 때문에, 인격체 개념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일정한 도덕적 지위가 단지 일정한 속성들을 지님과 연관된 것이라면, 이러한 지위는 단지 이러한 속성을 지님의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체 개념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존재를 도덕적 주체로 만드는 다양한 속성들을 열거한 집합개념으로서의 인격체 개념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 또한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⁶⁾

인간은 사물과 다른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사물과 달리 인간은 행위자이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의식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적 지위는 이러한 자율을 통해 그리고 자율과 연관된 자유권을 통해 정의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지위의 일면일 뿐이며, 의식이 없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인격체로서의 인간에 관한 신학적 입장은 단지 중 특유의 유전적 유기체 인간 생명이 있음만을 전제로 하지, 이 생명이 더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인간생명은 인간에로의 발달 과정에서 인격체가 되며, 배아와 태아 혹은 유아는 단지 생성

2)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인간에로의 성장이 시작되었음이 확실할 때 비로소 미래의 인간이나 잠재적 인간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한 확실성이 핵융합 직후에는 아직 없다. 수정된 난자가 착상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수정란 상태에서는 몇 명의 미래 인간이 발생하며, 또 생존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도 없다. 미래 인간의 정체성과 생존능력은 적어도 착상까지는 미지수이다. 보호가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므로 실제로 보호될 수 있는 생명만이 보호가치가 있다. 모체 속에서 수정과 착상 사이의 단계는 보호될 수 없다. 그리하여 착상 전의 수정란 보호를 위한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공 수정의 과정에 있는 유리점시의 수정란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체의 수정된 배아가 훨씬 더 성장한 모체 내의 배아나 태아보다 더욱 더 보호받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다. Merkel R, "Rechte fuer Embryonen? Die Menschenwuerde laesst sich nicht allein auf die biologische Zugehoerigkeit zur Gattung Menschheit gruenden", in: Geyer C, Hrsg. Biopolitik. Die Positionen, Frankfurt a. M. 2001, S. 51-64

3) Vossenkuhl W, "Der ethische Status von Embryonen", S. 129 f. in: Fuat S, Oduncu S, Schroth U, Vossenkuhl W, (Hg), Goettingen 2002 Stammzellforschung und therapeutiscens Klonen S. 163-169

4) 이러한 학자로 Schoene-Seifert B,를 들 수 있다. Dies., "Einhundert Zellen: Haben fruehe Embryonen einen unbedingten Anspruch auf Lebensschutz?", in: Der Tagesspiegel vom 3. Februar 2001

5) Warren MA, Moral Status. Obligations to Persons and Other Living Things. Oxford 1997. p. 90

6) Gordijn B, "Die Person. Zur Tauglichkeit eines zentralen Begriffs in der Bioethik", S. 129, in: Fuat S, Oduncu S, Schroth U, Vossenkuhl W, (Hg), Stammzellforschung und therapeutisches Klonen Goettingen 2002, S. 119-133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되어 가는 인간이며 아직 인간이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라 하는 생각은 배제된다. 발생 중에 있는 인간존재(Menschsein im Werden)는 있으나, 발생 중의 인간(der werdende Mensch), 발생 중의 인격체(die werdende Person)는 없다.⁷⁾

인간은 능력이나, 성별이나, 출신, 종교, 직업, 나이에 무관하게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일종의 종의 연대인 모든 인간의 연대를 즐길 수 있으며,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해 그 어떤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III. 배아연구와 인간존엄성에 관한 검토

시험관에서 인위적 수정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외 수정의 경우 제3자가 생명의 발생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생산된 생명을 순수한 객체로서 손안에서 완전히 임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이다. 배아는 아이의 출산을 위해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연구를 위해 즉 타인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단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지 않고 항상 스스로 목적으로서 존중됨으로서 지켜지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률의 요청에 알맞게 자율적이며 자유로울 때 존엄성을 지닌다.⁸⁾ 그것은 인간이라는 종의 구성원 모두에게 전제되는 것이며, 경험적인 크기가 아니라, 선험적 관념이다. 그에 알맞게 정언명령을 펼침에 있어 인간을 항상 스스로 목적 자체로 대하며, 자연존

재, 종의 일원로서의 인간에게 인격체임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존엄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 칸트의 인간존엄성 이론은 가톨릭의 입장과 같다고 하겠다. 인간존엄성은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정되며, 인간의 생명은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목적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어떤 인간생명도 생존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특별한 질적 기준에 상응한다는 증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⁹⁾ 인간이기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은 인간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생물학적인 인간 생명이 있음으로 족하다. 그렇다고 생물학적인 인간 생명에게 우선적으로 인간존엄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 이전의 생명체로, 인간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단지 모든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다룰 의무가 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이 생명의 전 과정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누려야 한다.

수정된 난자에서 하나의 새로운 개체의 유전자가 발생되고 그와 더불어 성장 과정과 개체 생명의 변화가 가동되면 생명이 시작된 것이며, 죽음과 함께 끝난다. 그리하여 초기 인간 배아도 우선적으로 생명권, 그리고 다른 것들에 의해 임의처리 될 수 없음에 관한 권리에서 구체화되는 무제한적인 인간존엄성 보호를 받는다.¹⁰⁾

치료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선한 목적도 살해라는 수단을 성스럽게 만들지 못한다.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줄이는 의학의 임무는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해치지 않는 치료 방법만을 허락하는 인간존엄성의 존중에 뿌리를 둔다.¹¹⁾

7) Eibach U, 같은 곳 S. 178, 여기서 발생 중에 있는 인간존재(Menschsein im Werden)란 이미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지만 발생과정 중에 있는 인간임을 의미하며, 발생 중의 인간(der werdende Mensch)은 온전한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는 아직 덜된 인간이며, 발생 중의 인격체(die werdende Person)는 아직 덜된 인격체로서 온전한 인격체로 되어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8) Kant I, Grundlegung zu Metaphysik der Sitten, in: Kant's Gesammelte Schriften, Akademie Ausgabe, Bd. 4 Berlin 1911, S. 434 ff.

9) Schockenhoff E, Ethik des Lebens, Ein theologischer Grundriss, Mainz 1993, S. 77 ff., 168 ff

10) Eibach U, 같은 곳 S. 199

11) Eibach U, 같은 곳 S. 200

IV. 초기인간생명 보호기준들에 대한 검토¹²⁾

1. 정체성

정체성 논거에 의하면 배아는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인간적 개체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배아로부터 성숙될 수 있는 후에 태어날 인간의 정체성이 배아에게 이미 있으므로 배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

배아는 처음부터 인간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존재와 마찬가지로 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인간존재를 호모 사피엔스 종의 구성원이라 보고 이러한 이유에서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쌍둥이 논변에 의하면 분리되면 하나의 아메바가 사라지고 두개의 새로운 아메바가 생기듯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둘로 나누어짐으로서 원래의 배아 존재가 끝나고 새로운 두 개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쌍둥이 중 그 누구도 원래의 배아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둥이의 경우 소위 전배아라고 일컫는 초기 배아는 두개의 배아로 나누어지고 원래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배아가 다른 배아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발생된 두 아이 중 한명만이 전배아 이룰테면 접합자와 동일하고 다른 아이는 좀 더 늦게, 즉 본래의 전배아로부터 분리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된다. 이것은 전배아에서 분리해낸 만능세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쌍둥이 형성에 있어 둘 중 어느 아이가 접합자와 동일

한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으며, 그 결과 일란성 쌍둥이 중 누가 나중에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그 판단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하기 원하는지에 달려있다.¹⁴⁾

2. 잠재성

배아에게 도덕적으로 중요한 생명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답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적 이익인가 혹은 어떤 조건에서 잠재적 이익도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잠재성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인간 배아의 현재 특성은 인간존엄성과 살해금지를 근거짓기에 적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배아에게 부여하는 생명권과 존엄성이라는 보편적인 인권은 기대할 수 있는 배아의 미래 특성들에 기초하므로 이러한 미래의 기회, 말하자면 그러한 잠재적 지위를 말살해서는 안 되며, 그 생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배아가 특정한 면에서 인간존재라는 견해를 갖는 사람은 더 정확히 묘사해보려 할 것이다:

- a) “배아는 잠재적 인간존재이다”, 혹은
- b) “배아는 잠재적 특성을 가진 인간존재이다”.

두 경우 모두 지금의 배아와 나중의 성인이 연관됨을 언급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배아는 a)에 의하면 잠재적 인간이며, 한편 b)에 의하면 현실적인 하나의 인간이지만, 잠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서로 상이한 주장은 각기 다른 형태의 논증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하나의 인간이기

12) 초기배아들의 보호기준에 대한 논거들을 분석하는 국내 문헌으로는 구인회의 생명윤리의 철학(철학과현실사), 김상득의 생명으로 윤리학 (철학과현실사), 임종식의 배아연구(구인회, 임종식 공저, 삶과 죽음의 철학, 아카넷, 91-140쪽)을 참조.

13) Ford NM, When did I Begin? Conception of the Human Individual in History, Philosophy and Science, Cambridge 1988, 120-122를 보시오.

14) Stoecker R, Contra Identitätsargument : Mein Embryo und ich, 138-139쪽 참조, in : Danschen G, Schoenecker D, Hrsg. Der moralische Status menschlicher Embryonen, Berlin 2003 : 129-145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위한 특성들에 대한 논증을 준비해야 하므로 '잠재성 논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두 번째 주장에서는 비록 계속되는 발달 과정에서 전개되는 잠재적 특성에 관련된 것이라도, 배아가 이미 현실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배아는 자신이 성장해서 되어질 인간과 일정한 특성에 있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을 '동일성논증'이라 부를 수 있다.

인간배아의 특별한 지위와 그것에 보장되는 법적 보호는 배아가 언제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되는가 하는 것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 의하면 아직 인격체로서의 인간으로 성숙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아는 성숙에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배아의 성공적인 인식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어떠한 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배아를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배아가 무엇이며,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목에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 답변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배세포들은 겉모습에 있어 아직 인간존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격체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체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다른 생명체들과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며, 권리의 행사자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세포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의 경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도덕감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3. 생물학적 발달상태 :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1) 수정시점

생명여부는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는 인간 생명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생물학

적인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면 염색체의 결합을 통해 수정란이 생성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정 순간을 생물학적으로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 순간부터 배아는 온전한 인간의 생명권을 가진다는 입장은 수정의 순간에 유일하고 반복되어질 수 없는 새로운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 수정란이 발생됨과 더불어 유전학적 프로그램이 확정된다는 현대 유전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가톨릭 교회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각 개체는 수정된 순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견되어 있으며, 그 개체의 발달 과정은 이미 예정된 존재로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궁에 착상되거나 뇌파가 발생하는 등 특정한 발전 단계가 있지만, 그러한 단계는 배아의 발달과정에서 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연속적인 과정일 뿐이다. 그러한 과정 전체가 확정되는 시점은 수정 시점이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생명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수정단계부터 생명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뿐 아니라 생명권의 의미나 목적에도 부합한다. 또 생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간의 생명권을 배아의 수정시점부터 인정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착상시점

자연적인 임신과정에서 모든 수정란이 인간으로 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수정된 배아가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삼아 자연도 배아를 존중하지 않는데, 자연에 반하여 법적 보호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착상 이후부터 인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⁵⁾

또한 배아는 그 자체로서는 성숙한 인간이 될 생존능

15) 정문식, 배아줄기세포연구시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존엄, 한양법학회 2006년 2월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력을 갖지 못하며, 자궁에 착상되어 모체와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될 가능성,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배아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한 시점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이 배아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배아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연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이며, 인간과 달리 자연에게는 도덕의식이나 인간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도덕적 가치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배아의 발달에 있어서 모체의 기능이 절대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체가 배아에게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는 생물학적으로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배아는 모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출생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영양공급이나 생명보호 등을 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수정 후 14일

배아의 발달과정에서 수정 후 2주까지는 수정란이 여러 개의 개체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으며, 14일이 지나면 원시선이 나타나면서 배아가 쌍둥이로 될 가능성을 상실하고, 완전한 개별성이 확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수정 후 14일 까지를 전배아, 그 이후를 배아라 한다. 이와 같이 아직 개인인지 다수인지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전배아에 개인적인 기본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별성이 확정되었을 때 개인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로 기본권의 주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이며, 기본권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¹⁶⁾

그러나 역설적으로 개체가 아닌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배아라면, 더 더욱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원시선이 나타나는 시점도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며, 14일 기준의 설정도 결국은 임의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배아연구를 위한 정책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출생

분만 시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구분선이라고 보아, 출생을 생명권 인정의 근거로 보는 입장도 있다. 출생과 동시에 탯줄제거를 통해 아기는 모체로부터 영양공급, 산소공급, 배설 등에 있어서 독립하게 된다. 민법과는 달리 형법학계의 판례와 통설은 살인죄의 객체로서 태아가 모체의 태반에서 이탈하기 위해 분만과정을 개시하는 시점, 즉 진통시점부터 사람의 생명으로 간주하여 보호한다.

헌법적으로도 출생전 배아는 기본권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이나 인간존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낙태를 살인행위로 규정해서가 아니라, 개체로서의 인간이 태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형법상 낙태죄나 민법상 태아에게 개별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보호의무 때문이지, 태아가 기본권의 주체이기 때문은 아니다.¹⁷⁾

출생이 분명 인간발달단계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구분시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개체로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배아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출생 이후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과 모체에 아직 연결된 태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5) 그 밖의 구분시점들

이 밖에도 생명권을 인정하는 시기를 구분하는 여러 시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간 생명의 종료인 사망을 뇌

16) 정문식 같은 곳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17) 정문식 같은 곳 참조.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파의 정지로 보는 뇌사설과 관련하여 뇌파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하거나 태동이 시작되는 시기, 또는 모체 밖에서도 일정한 인공기구의 도움을 받아 자립적으로 생존가능성을 갖게 되는 시기를 생명권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하기도 한다.

고통감지, 자궁 밖에서의 생존능력과 같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생명권의 등급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의식적인 고통감지를 영혼과 육신의 합일성의 표현으로 보는 것도 영혼이 의학의 대상이거나 자연과학적 의학방법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고통감지는 영혼의 존재를 알리는 표시가 될 수 없다. 정신적 존재와 작용원리로서 영혼은 고통감지의 시작보다 훨씬 이전에 이를테면 10-12 세포기의 초기배아에 이미 존재할 수도 있다.

배아는 신경조직이 없는 세포들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고통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배아는 폐기되어도 고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단지 배아를 생명체로 보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의 도덕 감정을 해치는 것은 그들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과 대략 같은 시기(임신 20-22주)에 태아는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며 조산 후에도 생존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태아와 조산아의 보호권을 차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궁 밖에서의 생존능력을 낙태의 시한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신생아가, 특히 신생 장애아가 생존능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성들여 아기를 돌보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모태 밖에서의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태아의 보호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 태아의 개별적 체질에 따라 임신 5개월에 이미 생존능력을 가질 수도 있으며, 생존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은 일률적이지 않다. 자궁 밖에서의 생존능력은 태아의 중요한 표징이 아니며, 진료하는 의사의 의학 지식

과 병원의 의료 장비에 좌우된다. 최신식 좋은 시설을 갖춘 서구의 신생아 병동에서는 임신 5-6개월의 조산아가 생존 가능하지만, 제3세계의 열악한 조건의 병원에서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출생지와 무관하게 같은 존재이다. 자궁 밖에서의 생존 가능한 시점은 의사의 능력과 의료기술의 상태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지, 인간의 가치나 생명체의 법적 보호가치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V. 연구목적에 대한 검토

배아줄기세포는 인간의 발생과 성장과정, 신체의 유기적 관계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생 의학이나 장기이식 등 분야에서 현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타인의 조직이나 기관의 이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반응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장기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연구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배아줄기세포연구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나 인간에 관한 생물학적 정보 탐사를 위한 기본연구라 하더라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같이 희생이 크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연구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¹⁸⁾

배아연구자들이나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구 필요성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들고 있다. 이 때 건강권은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 청구권으로서의 신체의 건강권이며, 생명유지를 위한 적극적 청구권으로서의 생명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연구, 특히 불치병이나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의 경우에는 배아의 생명권과 환자의 건강권이 충돌된다.

배아를 수정순간부터 온전한 생명체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치료목적이나 연구목적 등 특수 목적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여 이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18) 독일의 경우에는 배아줄기세포를 수입해서만 연구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명을 만들었다가 다시 파괴하는 것, 즉 파괴하기 위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원칙이나 도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임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잔여 배아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잔여배아들은 인간으로서 출생할 기회가 없고, 폐기되거나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길 뿐 다른 가능성이 없다. 독일에서는 잔여배아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아보호법을 통해 잔여배아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배아들은 냉동보관을 통해 영구히 보존하고 있다.¹⁹⁾ 이는 배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과연 배아를 영원히 냉동상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배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인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잔여배아들은 본래 임신을 위해 생성되었다. 그러나 개별적인 이유로 그러한 목적이 상실되어 이들의 운명은 냉동 보존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잔여배아들을 의학적 목적을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사용하면, 이 때 침해되는 배아의 생명권은 그냥 폐기되는 것보다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희생자가 되거나, 희생하는 것에 대한 연대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공감대가 전제된 사회라면, 의학적 연구를 위해 배아가 희생되는 것을 일방적인 배아의 생명권 침해나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²⁰⁾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상호 연대와 자율적 결정이 가능한 우리 성숙한 인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할 길이 없는 배아의 입장에서 일방적 희생일 뿐이다. 이는 생명이 희생되는 당사자인 배아를 포함한 연대가 아니라, 배아연구를 원하거나

허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적 공감대인 것이다. 우리에게 배아의 생명에 대한 임의 처리권이 없다.

배아는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거나, 주체성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러나 배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무관하게 배아는 수정순간부터 이미 그 자체로서 존엄한 존재다. 배아는 비록 자신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능력은 없지만, 분명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VI. 줄기세포 연구의 형태와 문제점

배아 줄기세포의 생성 찬성론자들은 환자의 건강과 연구자유가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연구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모든 치료약속은 지금까지 가정적일 뿐이며, 치료가능성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아직도 10-20년 동안의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낙태된 태아로부터 채취된 태아의 세포를 이식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주의를 경고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그러한 이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거나 보잘 것 없는 성과가 있었을 뿐이며, 파킨슨 환자의 경우 특히 심한 부작용이 있었다.²¹⁾

줄기세포는 출처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구별된다. 줄기세포는 무한히 증식될 수 있으며, 신체의 모든 세포유형을 형성할 수 있는 일종의 원천적 다기능세포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초기 인간생명인 배아를 희생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연구진은 자궁에 착상시키면 인간으로 자라날 인간배아를 만든 뒤 여기서 줄기세포를 채취한다. 배아연구는

19) 정문식 같은 곳 참조.

20) 정문식 같은 곳 참조. 정문식에 의하면 잔여배아를 비롯해 체세포복제배아가 연구 목적을 위해 희생되는 것은 인간존엄에 위배되지 않으며, 배아의 희생을 요구하는 연구의 목적이나 중요성이 높을수록 존엄침해는 희박하다. 하지만, 본래부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혹은 연구만을 위해 시료로서 사용되기 위해 배아가 생성되고 죽게 된다면, 배아의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의 물건처럼 객체로서,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당사자인 배아, 즉 초기 인간 생명체인 배아의 입장이나 이익이 배제된 상황에서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연구 목적을 위해 배아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간존엄 침해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21)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아의 신경세포로 치료받는 이중 맹검 실험에 참여했던 33명의 파킨슨 환자 중 5명에게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들은 한동안 운동 조절력을 잃었으며, 턱이 떨리며 이를 갈고, 몸을 허우적거리고, 팔이 떨리는 증상이 왔다. 한 환자는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튜브를 통한 인공급식을 해야 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한동안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게 말을 했다. Kolata G, Cell Implants in Parkinson's Study Cause Catastrophe. New York Times 09. 03. 2001, A1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난치병치료 연구를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희생하고 도구화하므로 용납하기 어려운 윤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원하는 질병치료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형 암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줄기세포의 효과발현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거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동물실험 결과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도된 기증세포는 체내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형종양이나 기형암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인체의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성체줄기세포는 세포분화가 안정되어 있어 치료에 활용이 쉬울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으며,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배아파괴와 같은 생명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 배아연구에서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없다. 성체줄기세포도 거의 무한한 분화 가능성을 지니므로, 실험실에서 배양되고 있다.

과거에는 출산 후 폐기 처리되던 뱃줄에서 채취되는 제대혈에도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줄기세포가 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는 타인의 것을 이용해도 거부 반응이 적으며, 척수에 주입하면 신경세포로, 간에서는 간세포로, 심장에서는 심장세포로 분화한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줄기세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과학자들은 그것을 배양 증식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다.

태아의 골수와 줄기세포에도 비교적 높은 세포증식과 재생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만 태아의 조직에서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든 체세포복제를 통해서든 인간배아를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약 4-5일 정도 분화시킨 다음 줄기세포를 채취하기 위해 배아를 파괴한다. 다시 말해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배아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배아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구를 위해 수많은 인간생명을 생산해내어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VII. 결론

우리로 하여금 헤어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생식의학과 유전학적 기술의 결합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 과학, 기술의 연합이다. 그러나 결정이 어디에서 내려지며, 정치도 얼마나 이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운지 파악하기 어렵다. 특허와 관련한 문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사업가로 변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립적인 윤리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이러한 이익갈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복제된 인간배아를 이용하여 치료제를 만들고, 의약품을 만드는 일이 마치 그 자체로 난치병 치료를 돕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명백히 배아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인간 생명체를 의학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단순한 생물학적 재료 수준으로 격하시키거나,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생물학적 재료로 취급하려는 시도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인간배아복제 연구로 인한 여성건강의 위해와 여성의 도구화 문제도 심각하다.

불치병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한 연구는 도덕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옳지 않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불가해(악행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으로 구성되는 생명윤리의 4원칙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윤리적 척도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윤리적 적용이 어려울 때가 있을 뿐 아니라, 4원칙을 적용하려면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선행의 원칙은 절대적 원칙이라기보다는 조건부적 원칙으로 평가된다. 배아의 연구에서는 배아의 생명권과 불확실하지만 연구를 통해 언젠가 먼 훗날 치료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이 서로 충돌된다. 환자를 돕기 위한 연구를 선행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해 배아를 죽이는 일은 배아를 해치는 일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는 선행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로 간주되지만, 다른 가치와 상충되거나 피치 못할 경우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불가해(악행금지)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 도덕원칙이다. 그러므로 불치병 환자를 돕기 위해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복제하여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한 인간 생명을 다른 인간의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근본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인간 배아는 수정의 순간부터 한 인간 생명으로 결정된 주체이며, 바로 그때부터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을 시작하게 되므로, 그 진행 과정의 어떤 단계도 단순히 세포덩이로만 여겨질 수 없다.

우리 모두 한번은 배아였다. 배아줄기세포를 얻으려면 배아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배아 상태의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생명을 타인의 치료 목적을 위해 임의 처리하는 것은 기득권자의 횡포이며, 강자의 폭력이다. 행위의 목표가 선한 것이라면 목표를 이루어내는 수단도 선해야 한다. 행위의 목표가 도덕성을 지녀야 하듯이 그 수단도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생명과학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유와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공명심이나 상업성을 배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식별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장애나 성숙의 정도와 무관한 인간존엄성은 생명권에

서 구체화된다. 인간존엄성 개념은 피조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생명도 존엄성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인간의 생명, 인격, 존엄성은 하느님 덕분이다. 따라서 인격체의 존엄성은 경험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에 걸쳐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된 선형적 숭고함이다. 어떤 인간 생명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질만하다고 스스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존엄성은 어떤 특별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과 동시에 정신적 능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에 기초하는 이러한 인간존엄성 때문에 모든 인간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인간의 자기목적성은 항시 그 자체 때문에 존중되며, 다른 것을 위해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일정한 속성들을 지니는 것이나, 요청되는 일정한 발달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인간존엄성에 연결시키는 것도 배제한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천부적 권리에 의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생물학적 종에 자연적으로 속함, 즉 인간 혈통을 지닌다는 특징만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정자세포와 난세포의 융합시점부터 인간존엄성의 보호영역에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 존재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로 인해 존중받을음을 의미한다. 인간배아의 생명권은 그 존재의 초기 단계에서도 계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아의 편에서는 다소간 견딜만한 제한에 관한 일이 아니라, 존재 전체에 관한 일이다. 점진적인 보호가치의 개념은 배아에게는 아무런 보호도 되지 않는다. 생명 자체와는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견주어 배아의 생명권을 저울질함은 임의적인 불평등한 대우이다.²²⁾

22) Schockenhoff E, Pro Speziesargument: Zum moralischen und ontologischen Status des Embryos. 27. ed by Damschen G, Schoenecker D, Der moralische Status menschlicher Embryonen, Berlin 2002: 11-34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9권 1호(통권 제15호) : 2006년 6월

배아가 보호가치를 갖게되는 시점에 관한 판단에서 공평한 입장은,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입장과 아직은 접합자이거나, 배아 혹은 태아의 상태로 있는 존재의 입장, 그 양쪽 입장을 모두 수렴해야 한다. 대략 30-40%가 인간개체로서 계속 발달할 기회를 갖게 되는 접합자가 인간존엄성의 보호영역에 들어가는가 하는 물음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위해 결정적이지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수한 편파적 이익입장에 의해서는 전혀 이성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²³⁾

본성과 인격체, 육신과 자아, 생물학적 개체와 도덕적 주체가 구체적으로 항상 분리할 수 없는 단일성으로서만 존재한다면, 개인이 인류에 속함은 이미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과 그에 따른 보호가치를 무제한으로 모든 경우에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행동 능력이 있는 하나의 건강한 주체로서 나타나는 인간에 관련된 것이든, 배아에 관련된 것이든, 식물 상태의 환자에 관련된 것이든, 치매노인에 관련된 것이든 그가 스스로 어떻게 존재하든 우리는 그를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실험에 이용되는 배아들은 미래의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어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를 그런 불확실한 과학연구를 위해 희생된다.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길이 없는 무고한 배아

가 살해되는 것이다.

생명권의 침해는 회복되거나, 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배아줄기세포의 채취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아의 죽음이 전제되므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연구자 개인에 의한 생명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이는 낙태와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다만 배아가 아직 모체에 착상되기 전에 연구에 사용되고 파괴되는 것 뿐이다. 그런데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를 장려하는 경우는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개인의 생명권 침해 행위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²⁴⁾

학술적인 차원이나 치료차원의 연구가 가장 약한 사회구성원의 생명권을 강탈한다면, 사회는 있을 수 있는 치료방법의 개발을 포기하고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건강은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고선이나 유일한 선이 아니다.²⁵⁾ ME

색인어 : 인간배아 연구, 인간배아의 지위, 인간생명의 존엄성

23) 같은 곳, 25 쪽 참조.

24) Hermes G, Das Grundrecht auf Schutz von Leben und Gesundheit, Miller CF, 1987, 88쪽 이하. 정문식 같은 곳 재참조.

25) Eibach U, Gesundheit ist nicht das hoechste Gut, Deutsches Aerzteblatt 2001 Heft 14 : A 899-900 비교.

Ethical problems concerning human embryonic research

KU In-Hoe*

The moral status of embryos plays a crucially important role in the ethical debates concerning human embryonic research. The continuity of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being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and the reality of the early embryo as a living organism, a member of the human species, have been underscored by recent biological discoveries. While it makes no sense to say that an adult human being was once a somatic cell or a gamete, it is a fact that every adult human was once an embryo. The embryo is the first stage of my life history, the beginning of my continuous development as a human organism. This claim makes as much sense as the uncontroversial claim that I was once a newborn infant, although I do not have any recollection of cognitive or specifically human "experiences" during that stage of life.

Catholic moral teaching on this issue is very clear. Every human life, from its first moment of existence until its natural death, deserves our respect and protection. Human life has intrinsic dignity, as opposed to merely relative or instrumental value. As such, every living member of the human species, including the human embryo, must be treated with the fundamental respect that is due to each person. Thus, Catholic moral teachings regarding respect for human life and any secular ethic in agreement with its basic premises reject all deliberate involvement with the direct killing of human embryos for research or other purposes. Such killing is intrinsically wrong and no beneficial consequences can lessen that wrong.

However, there are other reasons, besides those stemming from the definition of "personhood" for opposing human embryonic research. Even those who do not hold the human embryo to be a full-fledged human person can conclude that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is unethical.

• **key words** : Human embryonic research, Status of human embryos, Dignity of human life

* College of Medicine, Dept.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